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의 수수료
(제10조제1호 관련)

내용		금액(건당)
신기술 지정	1차 심사	100만원
	현장조사	실비
	2차 심사	100만원
신기술 유효기간 연장	현장조사	실비
	2차 심사	100만원

비고

현장조사 실비에는 현장조사에 참석한 심사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의 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라 신기술 지정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인과 행정안전부장관(「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6조제5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를 말한다)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